

2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.

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대한 **의학적 판단**을
등급판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의사소견서를 받고
있습니다.



의사소견서 내용

근력, 관절운동범위,
인지기능, 문제행동
유무, 의학적 치료
필요성 여부 등

※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안내해 드리는 기간 내에
제출하여야 합니다.

3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.

의료·보건·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
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를
기초로 의사소견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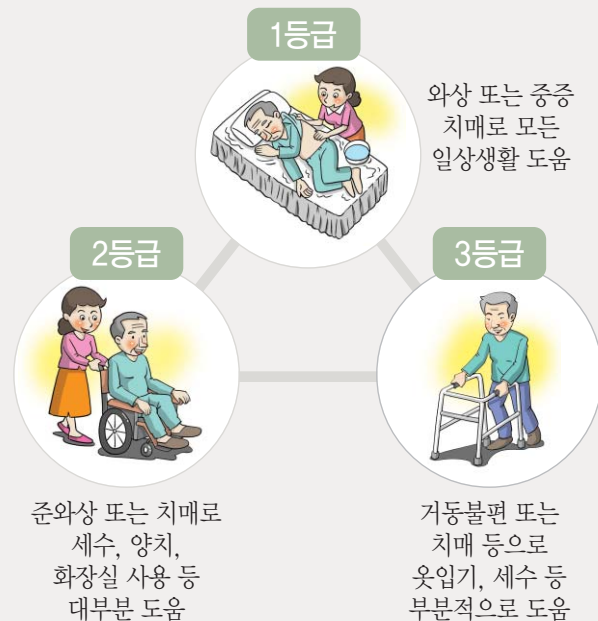


개인별 특기사항
등을 종합적으로
판단하여 최종
등급을 결정합
니다.

■ 등급 구분

구 분	장기요양인정점수
1등급	95점 이상
2등급	75점 이상 ~ 95점 미만
3등급	55점 이상 ~ 75점 미만

■ 등급별 수준



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
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(필요서류: 이의신청서,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)

문
의
상
담

·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
·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

노인장기요양보험

등급판정 이렇게 합니다.

장기요양 등급판정으로
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


밤(별), 낮(해)없이 사랑과 정성으로
보살펴(하트)드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
(Long Term Care)역할을 의미합니다.

Q 등급판정 기준이 무엇인가요?

A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「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」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것입니다.

Q ‘도움이 필요한 정도’를 판정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판정하는 건가요?

A 세수,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.

도움이 필요한 정도 =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

그러나 어르신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모두 재어보고 판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.

그래서 의학, 사회복지학, 통계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**등급판정 도구**로 판정합니다.

Q 등급판정 도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?

A 등급판정도구는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 조사결과를 가지고 ‘도움이 필요한 정도’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

- 1 치매·중풍 등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와 실제로 제공 받은 서비스 시간을 조사합니다.
- 2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제공시간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.

장기요양인정점수 산출

※ 「장기요양인정점수」 : 심신의 기능 상태와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의 관계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입니다.



등급판정 절차를 살펴보면...

1 우선, 방문조사를 합니다.

-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(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 합니다.

[기능상태를 나타내는 5영역 52개 항목]

영역	항목
신체기능 (12항목)	옷 벗고 입기, 식사하기, 일어나 앉기, 화장실 사용하기 등
인지기능 (7항목)	단기 기억장애, 상황 판단력 감퇴, 의사소통, 전달 장애 등
행동변화 (14항목)	망상, 환각, 환청, 길을 잃음, 밖으로 나가려함, 부절한 옷입기, 대/소변 불결행위 등
간호처치 (9항목)	기관지 절개관 간호, 경관 영양, 욕창간호, 도뇨관리 등
재활 (10항목)	상지·하지 운동장애 4항목 어깨관절, 팔꿈치관절 등 관절제한 6항목

- 방문조사 결과를 등급판정도구에 적용하면 어르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‘개개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’ 즉 **장기요양인정 점수**가 산출 됩니다.

식사, 환청,
욕창 등
52개 항목



장기요양
인정점수